

## 건축사 처벌 강화와 씨랜드 사건

### The Sea Land Incident and the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on Architects

박순중 / 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Jong

만약 검사가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범법을 못하게 하라. 의뢰인이 범법을 하면 변호사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우스개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은 이런 일을 버젓이 시키고 있다. “건축주가 위법을 못하게 하라. 건축주가 위법을 하면 건축사를 처벌하겠다”. 설계비를 주는 고객 건축주를 감시하고 감독하여 고발하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범법자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공무원은 국민이 있음으로 존재한다. 건축사는 건축주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공무원은 국민을, 건축사는 건축주를 보호할 원천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건축주를 고발해야 처벌을 안 당한다! 마치 공산 국가에서 아버지를 고발해야 살 수 있는 아들처럼.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길까? 설계는 잘하지만 건축 허가·사용검사를 잘 못하는 건축사에게?, “위법 위법”하며 건축주 고발하는 건축사에게?, 예술적인 설계는 잘하지만 안 팔리는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에게? 위법건축주를 고발하면 소문이 나 설계를 못한다. 오히려 위법요령을 알려주고 준공비 등뽕 받아 처벌권자에게 로비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로부터 배운 사업가의 진면목 아니던가? 건축사들에게 치열한 설계수주경쟁이 있듯이 건축주들에게도 치열한 판매경쟁이 있다.

옆집이 적당히 위법하여 큰 이익을 남긴다면 준법하는 건축주만 바보 아닌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착공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를 하는데 이 일을 소위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라고 한다. 그동안 이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이해 당사자인 건축사에게 대행시켜왔다.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일을 시켜왔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주인이 나쁜가, 고양이가 나쁜가? 건축주! 스스로가 시공한 집을 사용검사하여 팔아먹는다면 아마 환상적인 사업일 것이다. 마음대로 위법·부실하게 지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건축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버젓이 24년간이나 있어왔다. 건축주 자기가 고용한 감리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니 건축주 자신이 사용검사한 것이나 같다. 이런 환상적인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 위법 없는 건축물이 과연 존재하는가? 씨랜드 화재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등.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이다. 국가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시킬 때에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일을 시키고 정당한 보수도 아니 주면서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의제라며 깡패처럼 처벌이라는 주먹을 휘두른다. 건축사들은 왕따 당하는 어린 학생처럼 어디 가서 이리지도 못하고 반항도 못한다. 노예근성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건축사들 인권이 짓밟혀도 국민들의 생명이 보호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붕괴되는 건물로 희생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건축사들 스스로 감리를 잘못해서라고 자책을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론 모든 언론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감리는 무엇인가? 감리는 건축주가 주는 감리비 받고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데 감리가 무슨 필요란 말인가, 착각하지 말라. 무지몽매한 건축사들이여,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를 해도 건축주의 돈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설계비·감리비를 주지 않는다. 건축사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지켜 주어야 할 건축사협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제 건축사 처벌을 강화하여 씨랜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한단다. 언젠가는 건축사 처벌이 약했다? 공무원 의제로 징역 5년 이랬다 7년 이랬다! 위법·부실 건축을 막으려면 건축주들에게 위법·부실 건축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엄격한 착공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더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게 무보수로 일 시키고 책임지우는 직무유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건축사는 건축주가 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 **■**